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전문기관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등
업무 위탁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91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전문기관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등 업무 위탁	2
※ 참고자료	7
1.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 절차	7

I. 제안경위

2025년 6월 26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전문기관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등 업무 위탁

개정안은 ①법 제53조제1항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②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환경영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현행	개정안
	<u>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선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 ③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²⁾을 하려는 자³⁾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

2)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성업무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 (발주청)이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함⁴⁾.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에 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①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②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③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4)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국회토론회(녹색연합 주관) 자료집, 2024.11.26.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통한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 예방하고, 평가서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평가대행업체(1종·2종) 간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등의 대행계약 체계 전환(공탁제 등)에 공감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반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통한 영향 분석, 제도 설계(적용 대상사업 선정 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6).

6)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예외없이 모두 대행자 선정기관에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점과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원리(2004헌바40 등)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친환경건물과)”는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에 대해 공감대 없는 경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선정기관의 전문성·기대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 배제 불가(설계자료는 경영상 비밀로 공유될 수 없음)하고, 공정한 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대행업체 선정 뿐 아니라 모든 분야별(환경질·생태조사, 기상, 경관 등) 외주업체 선정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협의는 사업자와 협의기관 간 최적의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선정기관을 통한 수행 시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할 사업자 동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사업자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내용일 경우 향후 법적 다툼 발생 우려), 사업자는 대행계약 체결 완료 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의견에 따른 추가 현황조사, 영향예측에 대한 비용 발생 시 추가분에 대한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한국환경연구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계약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적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민간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구조나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하여 책임 주체가 모호하므로, 공탁제 도입 시에는 환경적 영향이 크고, 공공부문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탁제와 관련하여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거짓 또는 부실 평가서 발견 시의 법적 책임 귀속, 공탁제 운영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분장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검토가 선행된 뒤, 충분한 논의가 축적된 이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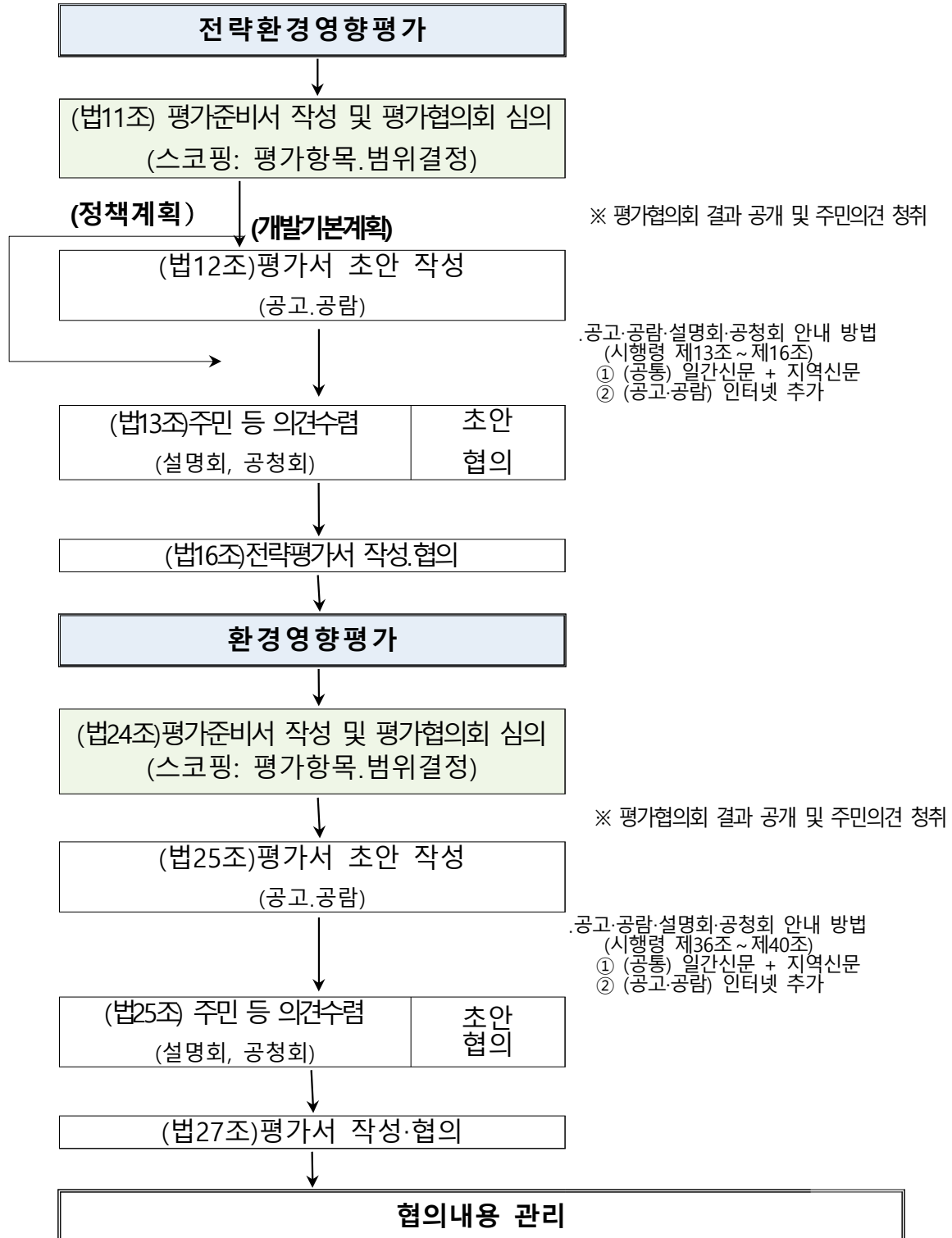
참고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17호)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재평가사업, 심층평가 사업과 같이 환경영향이 큰 사업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행자 선정기관은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계약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전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과 위탁기관 운영비용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탁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 절차



※출처 : 기후에너지 환경부